# 38.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

## □ 민원개요

○ 조세의 신뢰성 확보 및 회계질서의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세액의 부과 착오, 납세자의 이중납부,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액 발생,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

## □ 민원 처리현황

| 담당부서 | 재무과 | 처리기간 | 즉시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---|
| 근거법령 | 지방세기본법 제60조, 동법시행령 제37조<br>지방세기본법 제63조, 동법시행령 제44조 | | | 없음 |

## □ 구비서류

○ 신청서(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), 입금계좌(본인명의)통장 사본

○ 환급금 양도 시

-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, 양도인 신분증 사본, 양수인 신분증 사본
- 양도인이 사망자인 경우 : 가족관계 증명서, 양수인 신분증 사본

## □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(위택스), 전화 및 팩스

## □ 업무처리 흐름도

환급금 발생 (감액, 과오납 등) (각 세목 담당자) → 환급결의 및 환급안내문 발송 (환급 담당자) → 환급신청 (민원인) ↓ 환급금 지급결의 (환급 담당자) ← 납세자 계좌 입금

## □ 유의사항

○ 양도 시 :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확인

○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체납액에 충당됨.

## □ 문의처

| 부서명 | 전화번호 | 비고 |
|---|---|---|
| 재무과 세입담당 | 930-3135 | |